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74
----------	------

2024년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이동률)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 2024.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서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4)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건물면적 : 연면적 18,925m²,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부지면적 : 97,684m²(대지 : 43,241m², 임야 : 54,443m²)
- 연수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5) 민간위탁기간 : 2025. 1.1. ~ 2027. 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275,507천원 / 년, ※ 재위탁 공고금액('25년 예산편성)
- 산출근거 :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4. 9.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
-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서천연수원 개원 : '07. 6. 26
- 최초위탁(1차) : '07.6.1~'10.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2차) : '10.6.1~'13.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3차) : '13.6.1~'16.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4차) : '17.7.1~'18.12.31(수탁업체 : (주)HTC) : 수의계약
※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 재 위 탁(5차) : '19.1.1~'21.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 재 위 탁(6차) : '22.1.1~'24.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2024.12.31.)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서천연수원 현황 〉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월호리621)
- 부지면적 : 97,684 m^2 (대지 : 43,241 m^2 , 임야 : 54,443 m^2)
- 건물규모 : 연면적 18,925.38 m^2 , 지하2층~지상4층(4개동)
- 주요시설 : 객실 151실(객실 136실, 단체 연수실 15실)
 - 연수시설 : 대강당, 시청각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등
 - 식음시설 : 대식당, 카페테리아
 - 편의시설 : 편의점, 키즈카페, 노래연습실, PC방, 북카페, 당구(탁구)장, 사우나, 세탁실, 야외수영장, 족구장
 - 주차대수 : 164대(지상)

〈 조직 및 인력 〉

- 조 직 : 4개팀 47명(원장1, 팀장4명, 직원 42명)



□ 인 력 : 정원 47명 / 현원 44명

(2024.9.30. 기준)

구 분		소 계	원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비고
		44	1	2	2	1	8	5	26	
객실팀	정원	25				1	1	1	22	
	현원	25			1(휴직)		1	2	21	
식음팀	정원	10				2	2	3	3	
	현원	7				1	2	1	3	
시설팀	정원	8			1	1	3	1	2	
	현원	8		1			4	2	1	
지원팀	정원	4	1	1			1	1		
	현원	4	1		1		1		1	
과부족		▽3	-	-	+1	-3	+1	-1	-1	
비정규직										

○ 서천연수원은 개원(2007.6.26.)이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현황 〉

(단위 : 백만원)

위탁회수	수탁업체	협약금액	수탁기간	입찰 방법	비 고
(1차) 최초위탁	(주)HTC	1,980	'07.6.1~'10.5.31(3년)	공개경쟁	
(2차) 재 위 탁	(주)HTC	1,980	'10.6.1~'13.5.31(3년)	공개경쟁	
(3차) 재 위 탁	(주)HTC	2,020	'13.6.1~'16.5.31(3년)	공개경쟁	
(4차) 재 위 탁	(주)HTC	2,018	'16.7.1~'18.12.31(2년6월)	수의계약 (2회유찰)	시의회동의 09-1005 ('16.3.9)
(5차) 재 위 탁	(주)산하HM	2,139	'19.1.1~'21.12.31(3년)	공개경쟁	
(6차) 재 위 탁	(주)산하HM	3,005	'22. 1.1. ~ '24. 12.31(3년).	공개경쟁	시의회동의 10-2416 ('21.5.25.)

※ 위탁기간 3년 이하는 회계·결산연도 일치코자 단축 위탁

○ 서울시는 서천연수원 외에도 수안보연수원과 속초수련원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속초수련원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4개소는 시설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연수원 운영 현황 〉

구 분	속 초	서 천	수안보	제주	경주	통영마리나	통영ES
운영형태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임차	임차	임차	임차
개원	'97. 3. 15. ('09 리모델링)	'07. 6. 26.	'08. 7. 11.	'22. 4. 1.	'24. 4. 3.	'24. 4. 3.	'24. 4. 3.
부지면적	25,936㎡	97,684㎡	59,815㎡	13,323㎡	238,116㎡	10,027㎡	20,165㎡,
규모	지하2층, 지상8층(1동) 연면적 7,243㎡	지하2층, 지상4층(4동) 연면적 18,925㎡	지하2층, 지상6층(4동) 연면적 21,731㎡	지상4층 지하1층 3개동 연면적 3,682㎡	지하4층, 지상6층(1동) 연면적 8,090㎡	지하1층, 지상15층(1동) 연면적 2,380㎡	지상2층 8개동 연면적 4,819㎡
객실수	80실	151실 (단체용 15실)	110실	77실	20실	15실	10실
연수시설	중강당	대강당, 중강당2 시청각실1, 소강의실3	대강당, 중강당2 시청각실1, 소강의실5	컨벤션홀 (300석, 150석)	세미나장, 대연회장 (300석)	세미나실, 연회장 (300석)	세미나실 (100석)
수영장	무	유	유	유	유	무	유
운동시설	테니스장	다목적시설 (족구장 등)	다목적시설 (족구장 등)	×	골프장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주차장	83대	164대	164대	120대	361대 (장애인5, 전기차6)	500대 가능	105대
주요시설	· 사우나, 노래방 · 북카페, 매점 · pc방, 식당 · 어린이놀이터	· 사우나, 노래방 · 북카페, 매점 · pc방, 식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방 · 당구장, 탁구장 · 체력단련실	· 사우나, 노래방 · 북카페, 매점 · pc방, 식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방 · 당구장, 탁구장 · 체력단련실	· 레스토랑 · 바비큐장 · 산책로 · 에코아로마	· 한식당, · 커피숍 · 양식당 · 편의점 · 사우나 · 수영장	· 한식당, · 커피숍 · 양식당 · 편의점 · 사우나 · 요트 · 아로마	· 노래방 및 플레이존 · 생태정원 · 동물농장 · 양식당 · 한식당 · 카페 · 야외수영장

- 서천연수원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¹⁾에 따라 3년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행정국은 2024년 11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금액 : 연3,276백만원(충남형 생활임금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 입찰 공고금액, 참가업체 제안가격,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 위탁사무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 선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 공개경쟁입찰
 - 공고금액, 계약방법, 모집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협약체결 내용
 - 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포함
 - 세부 추진절차

```

graph LR
    A["① 모집공고 ('24.10월)"] --> B["② 모집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24.10월)"]
    B --> C["③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24.11월)"]
    C --> D["④ 계약 및 협약심사 ('24.12월)"]
    D --> E["⑤ 협약체결 ('24.12월)"]
          
```

※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종합평가 점수는 68.53점임.

년도	구분	평가 점수	주요 성과
'24년 3차	서 천	68.5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항 : 수익금 증가로 매년 예산집행률이 100%를 상회, 운영기간 내 투자사항이 협약기간 내 이행 - 개선사항 : 만족도가 낮은 객실·화장실 개선, 위탁금 관리와 지도점검에 대해 이행 노력, 필수교육 이수 필요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다만, 서천연수원은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 한 업체(舊)HTC, 現)산하HM)가 장기수탁(17년 6월)하였는 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관리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동의안 제출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필요성 및 운영개선 방안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 반대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위탁기관의 통제력 감소, 서비스 품질의 점진적 하락, 투명성 부족, 사회적 약자 소외,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 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 민간위탁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행정국은 호텔, 콘도 등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바,
 - 서천연수원 운영은 연수훈련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로서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 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며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다만, 서울시 연수시설의 최근 3개년 객실 이용률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천연수원 만족도는 85% 수준으로 타 연수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객실 이용률(2024년 75.1%)은 전체 평균 이용률(2024년 80.2%)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개년 연수원 객실 이용률 〉

구 분		총 합	속 초	서 천	수 안 보	제 주	남해권역
'24년 (9월)	평균	80.2%	89.9%	75.1%	67.9%	93.1%	87.9%
	비수기	71.3%	87.9%	63.4%	49.7%	93.5%	85.1%
	성수기	93.4%	92.8%	94.0%	94.0%	92.7%	91.7%
'23년	평균	75.9%	88.9%	69.9%	65.1%	87.9%	-
	비수기	67.4%	86.7%	60.5%	48.2%	87.7%	-
	성수기	88.9%	92.3%	85.4%	90.5%	88.8%	-
'22년	평균	74.1%	88.8%	69.1%	60.4%	92.7%	-
	비수기	61.7%	85.1%	55.2%	38.6%	93.3%	-
	성수기	91.4%	93.8%	89.2%	92.2%	91.9%	-

※ '20, '21년 코로나19로 연수원 운영 중단

〈 최근 3년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

구 분	속 초	서 천	수 안 보	제 주	남해권역
'24년	'24년 11월 실시 예정				
'22년	85.3%	85.4%	85.5%	86.9%	-
'20년	83.9%	82.1%	86.6%	-	-

- 또한, 올해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출·퇴근, 연차, 조퇴 등 복무관리 미흡, 예산항목별 초과지출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건별 조치와 함께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

- '24년 상반기 : 7.10.(수) ~ 7.11.(목)

구분	개선 사항	조치 결과
복무관리	○ 연차는 매년 정산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연차는 월별 급여에서 삭감)	○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매해 11월분 급여에 정산예정
	○ <u>직원들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철저</u>	○ 월별근무예정표 매월 마지막주에 수령하여 전부서 근무스케줄 관리예정 - 출퇴근 시간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출퇴근기록에 대하여 수정되지 않도록 관리
	○ <u>연차, 조퇴, 지각, 초과근무 등 복무변동시 일자별 시스템 사전결재 후 시행(수기결재 x)</u>	
예산관리	○ <u>예산항목별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목별 예산관리 철저</u>	○ 사전 근무스케줄을 수령 및 조율하여 해당 항목의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객실 청소 초과수량에 대한 기타 수당 지급건 환수조치 예정.(총인원 10명, 금액 5,252,750원-8월기준)
	○ 예산 전용 시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철저 및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 25년 사업추진부터 시스템 도입
	○ 경조사비 등 예산 집행시 서울시 관련 규정 준수	○ 이전 경조사비 집행시 모법인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 과다지급이 된 것으로 보여짐. 차후 경조사비 집행시 “서울시”의 규정에 따라 지급예정
	○ '23년 환수금 납입분을 모법인으로부터 이체받기 바람	○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상계처리 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발생시켜서 처리 할 예정
	○ 예산 집행시 지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자료 작성·관리	○ 지출건별 자료 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1. 창의관 지하 단체연수 객실 정돈불량 2. 집중호우로 인한 정비	1. 창고 정리 - 창의관 비품등 정비완료(9/27) - 직원 숙소로 임시 사용 예정 시 서울시 사전 보고 예정 2. 유실된 토사 및 지반보강작업과 배수로 정비 작업 완료

- 아울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개선요청 사항인 서천연수원만의 브랜드화된 프로그램 기획, 사회적 약자 관점의 안전점검 철저, 사우나 시설 개선, 객실 및 화장실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p>개선요청사항 - 공통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연수원만의 브랜드화된 프로그램 기획 및 타기관 대비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함 □ 최근 2년간 정규직의 이직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측면은 관리하여야 할 사안이며, 당해 연도별 ESG경영계획을 목표와 함께 설정하기 바람 □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기자재 관리의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p>개선요청사항 - 사업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주된 이용객인 단체연수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인 사우나 시설의 개선(해수사우나 또는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사우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수행사 유치를 높이기 위해 연수행사 시에 주로 이용하는 부대시설인 사우나 시설의 개선과 만족도가 낮은 객실, 화장실, 직원들의 불친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사계절별로 이용률 평가가 필요하며, 객실과 직원들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부대시설별로 이용률과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연수원(숙초, 수안보) 대비 다소 낮으므로 이용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천연수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표설정에 있어 매년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목표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것은 목표설정의 도전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천연수원-」, 7페이지

-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국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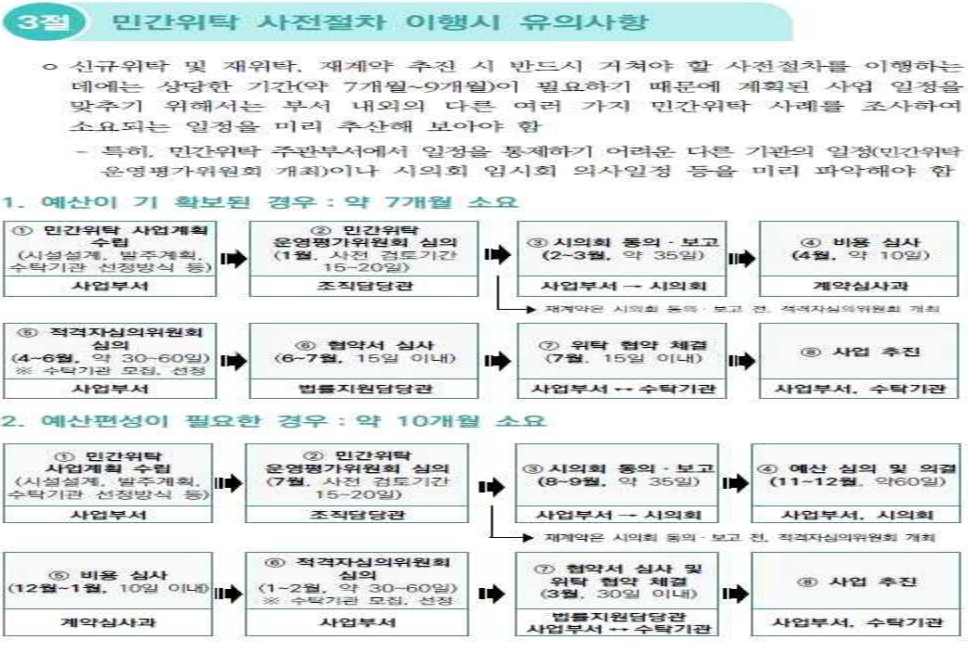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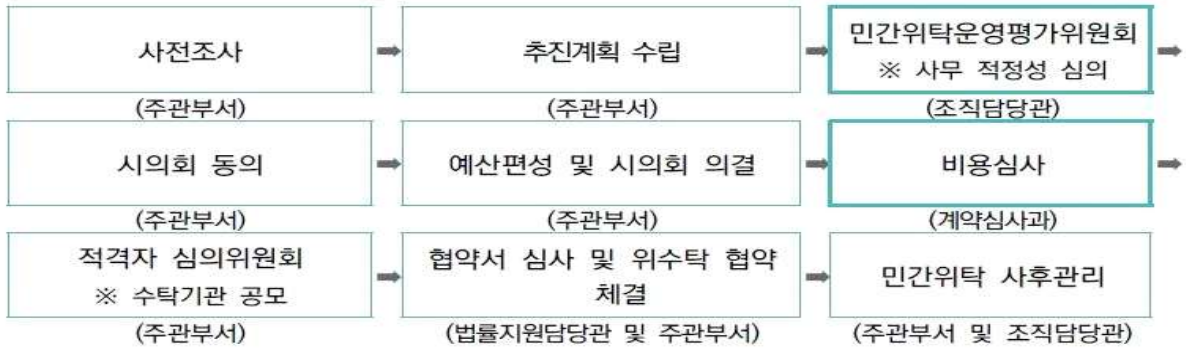
- 한편, 금번 동의안 제출시기와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약 7~9개월)이 필요하므로 소요되는 일정을 미리 추산하여 진행토록 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 동의 및 예산의결 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탁기관 모집,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



추진절차 개요

① 재위탁 공모 절차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의 경우 방침을 올해 8월말(8.29.)에 수립하고, 심의(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후 의회 동의없이 모집공고를 시행 (10월)하고 제안서 평가, 계약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수탁단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 행정국은 기존 수탁단체의 선정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위반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 권한을 경시하고 축소시키는 것임.

V 주요 추진 일정(안)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4. 9월
- 수탁사 선정 계획서 수립 '24. 9월
- 모집공고 '24.10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사 선정 '24.11월
- 원가·협약 심사의뢰 및 협약체결 '24.12월
- 신규 수탁사 운영 '25. 1월

- 출처 : 행정국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서 및 서울시 누리집 발췌

-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은 서울시 각 부서의 분장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맡겨 대신 수행토록 하는 예외적인 행정 목적 실현 수단이므로 민간위탁의 시행에 투명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바, 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추진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행정국의 ‘공모절차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74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로서
- 나. 2024.12.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요성 :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 부서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연수와 직원들의 휴양·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서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건물면적 : 연면적 18,925m²,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부지면적 : 97,684m²(대지 : 43,241m², 임야 : 54,443m²)
- 연수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5. 1.1. ~ 2027. 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275,507천원 / 년, ※ 재위탁 공고금액('25년 예산편성)
- 산출근거 :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4. 9.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서천연수원 개원 : '07. 6. 26
- 최초위탁(1차) : '07.6.1~'10.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2차) : '10.6.1~'13.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3차) : '13.6.1~'16.5.31(수탁업체 : (주)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4차) : '17.7.1~'18.12.31(수탁업체 : (주)HTC) : 수의계약
※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 재 위 탁(5차) : '19.1.1~'21.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 재 위 탁(6차) : '22.1.1~'24.12.31(수탁업체 : (주)산하에이치엠) : 공개경쟁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오상배 (☎ 2133-5783)